

Q 제과점을 개업하기 위해서는 영업 허가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이철규/ 서울 종로구 평창동

A 제과점을 개업하기 위해서는 ‘식품 영업 허가’ 와 ‘사업자 등록’ 을 마쳐야 합니다. 먼저 영업 허가를 내려면 소정의 교육을 마쳐야 하는데 이 교육이 ‘신규업주위생교육’ 입니다. 이 교육은 대한제과협회에서 정부의 위탁을 받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업하려는 사람은 지정된 교육 날짜와 장소를 파악해 6시간 교육을 받으면 교육 필증이 배부됩니다.(서울, 강원 지역: 문의 273-1830, 경기 지역: 0331-31-0100)

그 다음 개업하려는 지역의 구청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도장을 지참하고 구청에 가서 구청 내에 비치된 ‘신규 허가 신청서’를 작성해 ‘신규업주위생교육 필증’과 함께 접수시키면 일주일 정도 후에 영업 허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개업 예정인 날짜와 신규업주위생교육 날짜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 교육을 받지 못해 교육 필증이 없기 때문에 영업 허가를 내는 데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개업하려는 지역의 대한제과협회 지회 · 지부를 찾아가 어느 날짜에 교육을 받겠다는 서약서를 쓰고 이를 구청에 제출하면 교육 필증과 같은 효과가 있어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자신이 서약서에 쓴 날짜에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 후 배부된 교육 필증을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2개월(교육은 월 1회 실시)내에 교육을 받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됩니다.

영업 허가를 냈으면 그 다음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 담당 기관은 세무서입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에는 사업자등록증 발급 신청 서류,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세무서에 비치되어 있음), 주민등록 등본 2부, 제과점 영업 허가증 사본 1부, 접포 임대 계약서 1부(강제 사항은 아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Q 제과 제빵 취미 강좌에 대한 호응과 수도권에서 주부 강좌를 운영하는 곳을 알고 싶습니다.

이미영/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A 4년전부터 주부들의 제과 제빵 열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각 사회복지관, 가정용 오븐 업체, 백화점 문화 센터 등에서 운영 중인 제과 제빵 강좌는 수도권에 17개 가량이 있습니다. 이들 교육 기관에서 실시하는 취미 강좌는 주부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어 이곳을 통해 배출된 수강 인원만 해도 6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과제빵 취미강좌 기관의 현황입니다.

기관명	교육과정	연락처	비고	기관명	교육과정	연락처	비고
동양매직 요리교실	3개월(주 1회)	269-1851		LG전자 요리교실	3개월(주 1회)	648-6373	
점심·롯데백화점 문화센터	3개월(주 1회)	411-5863		린나이 요리교실	3개월(주 1회)	320-5561	
북부 사회복지관	3개월(주 2회)	934-7711	자격증반	동촌사회복지관	2개월(주 2회)	658-8800	자격증반
YMCA 근로여성회관	6개월(주 3회)	804-8755	자격증반	종계사회복지관	3개월(주 2회)	952-0333	자격증반
동작사회복지관	3개월(주 3회)	814-8114		태화기독교 사회복지관	3개월(주 2회)	3411-6470	
인천여성문화회관	4개월(주 5회)	032-511-3141	자격증반	신사 사회복지관	3개월(주 2회)	376-4141	
신림 부녀교실	3개월(주 2회)	877-9288		생명의 전화 복지관	3개월(주 2회)	916-9183	자격증반
영등포 부녀교실	3개월(주 2회)	670-3490		강동 사회복지관	3개월(주 1회)	475-4585	
애경백화점 문화센터	1개월(주 1회)	818-0889		*비고란에 표시가 없는 곳은 취미반 위주 운영임			

제과점 상담 참여 안내

본지는 독자 여러분에게 좀더 다가가는 잡지가 되기 위해 독자의 궁금 사항을 해결해 드리는 ‘제과 상담’ 코너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과 전반에 대해 궁금 사항을 독자 엽서를 통해 의견을 보내 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